

2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 전공시험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 2시간 23분 완성

도서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ISBN : 979-11-7393-341-7

발간일 : 2026-08-27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5,000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지구별 수협(p15)

제3장 업종별 수협(p136)

제4장 수산물가공 수협(p144)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p150)

제5장 수협협의회(p155)

제6장 수협중앙회(p157)

제7장 감독(p246)

제8장 벌칙(p258~268)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위

시군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지도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사업이사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된 내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12조

1. 목적

-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어업/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
-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2. 정의

가. 수산업은 어업, 수산물가공업

나.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은 어업,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다.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는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양식업자

라. 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 수협

마. 중앙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

3. 명칭

가. 사용 기준

1)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 붙인 수협 명칭 사용

2)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양식방법 포함)이나
품종명 붙인 수협 명칭 사용

- 주된 사무소(이하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지자체 명칭 함께 사용 가능

3)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 붙인
수협 명칭 사용

-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지자체 명칭 함께 사용 가능

4) 중앙회는 수협중앙회 명칭 사용

나.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아니면
상기 명칭, 유사 명칭 사용못함

- 단, 조합/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중앙회 인정 법인이 조합/중앙회 정관에 따라 승인 받은 때는 사용 가능

4. 조합과 중앙회의 법인격 등

- 법인으로 함
- 주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5.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조합과 중앙회는,

- 업무 수행시 조합원/회원을 위해 최대한 봉사
- 일부 조합원/회원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 못함
- 설립 취지에 반해 영리, 투기 목적 업무 못함

6. 중앙회등의 책무

가. 중앙회는

- 1) 회원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 노력
- 2)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

-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해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키면 안됨

- 단, 중앙회가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
수행시는 직접 경합아님

3)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나. 중앙회등(중앙회와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
단, 수협은행은 제외)은 회원이나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 받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통, 가공, 판매, 수출
적극 추진,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

7.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조합등(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는 행위 못함
-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해 상기 행위 못함

8. 부과금의 면제

- 가)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국가, 지자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 나) 예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의 사업(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수협은행 사업에

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9. 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가. 국가와 공공단체는

- 1) 조합등과 중앙회 사업에 적극적 협력
 - 조합등과 중앙회 사업 경비 보조/융자 가능
- 2)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 침해못함

나. 중앙회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 발전을

위해 국가, 공공단체 의견 제출 가능

- 국가, 공공단체는 반영 노력

10.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
협동조합**과 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
노력

1.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가) 조합과 중앙회 사업에 다음 적용안함

- 보험업법
- 해운법(사업의 등록)
- 석유사업법(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여객자동차법(면허 등, 운임/요금의 신고 등,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화물자동차법(유상운송의 금지)

나)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준용

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에
화물자동차법(유상운송의 금지) 적용안함

2.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가) 중앙회,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
적용시 동일한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 운용 가능

나) 상기 외에 중앙회, 수협은행을 사업,
사업장으로 해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으로 정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조합등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
공급시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지구별 수협

제1절 목적과 구역

제2절 설립

제3절 조합원

제4절 기관

제5절 사업

제6절 회계

제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절 등기

제1절 목적과 구역

13~15조

1. 목적

-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 제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
- 조합원에 자금/자재/기술/정보 제공
-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2. 구역과 지사무소

가) 구역은 시/군의 행정구역 따름

- 예외) 장관 인가 받은 때

나) 정관에 따라 지사무소 둘 수 있다

3.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 조직 가능

- 그 구역은 어촌계 정관으로 정함

제2절 설립

16~19조

1. **설립인가 등**

가. 설립시 구역의 조합원 자격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장관 인가 받음

나. 설립인가 기준

1) 조합원 자격 있는 설립동의자(합병/분할시
조합원)의 수

- 지구별수협은 구역 거주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200명 이상

-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은 구역 거주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2) 조합원 자격 있는 설립동의자(합병/분할시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분할시
출자금총액)

- 지구별수협은 3억,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은 2억 이상

다. 창립총회 의사는 개의 전 발기인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

라. 장관은

1) 설립인가 신청 받으면 다음 이외는 인가 요

- 설립인가 구비서류 미비
- 설립 절차, 정관, 사업계획서가 법령 위반
- 설립인가기준에 미달

2) 신청 60일내 인가 여부 통지

- 기간내 인가 여부, 처리기간 연장 여부
- 미통지시 기간(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된 때 해당 처리기간) 끝난 날 다음날 인가 간주

2. 정관 기재사항

- 목적, 명칭, 구역, 주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 자격/가입/탈퇴/제명
- 출자 1계좌 금액, 조합원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 방법, 지분 계산
- 우선출자
- 경비/과태금 부과/징수
- 적립금 종류, 적립 방법
- 잉여금 처분, 손실금 처리 방법
- 회계연도, 회계